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026호 2016년 11월 4일(금)

공 고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속초시 공고 제2016-748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 등의 반입을 제한 함.(안 제5조)

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생활폐기물은 1톤당 38,500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1톤당 38,5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는 1톤당 84,500원 함.(안 제6조)

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국환경공단,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환경자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99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60 /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환경관리팀)
- 연락처 : 033-639-2741 (FAX 033-635-219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관리팀(033-639-2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소각장 : 속초시 방축길 56
2. 속초시 위생매립장 : 속초시 방축길 60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1. 생활폐기물 : 1톤당 38,500원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1톤당 38,500원

3.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 1톤당 84,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찌꺼기는 반입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축·수선)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축·수선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축·수선에 필요한 절차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란 및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란을 삭제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6.1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4조)

마.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환경자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99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60 /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환경관리팀)
- 연락처 : 033-639-2741 (FAX 033-635-219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관리팀(033-639-2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조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매립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5.“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사용료”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지원협의체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한 동별 주민대표 : 7명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준용하고 관외 위원의 경우 여비는 세출예산집행지침 행사실비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해당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협의)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3장 기금

제6조(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2.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안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안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그 지역의 여건 및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환경자원사업소장
2. 기금 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출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안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상급기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와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이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자원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조양동장, 청호동장, 대포동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명,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위원의 참석수당은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 해촉)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한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4장 주민편익시설

제18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제20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부대시설의 이용료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유사시설의 이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사용료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입장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원협의체, 속초시가 출자한 공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20조 관련)

구분	목욕탕			목욕탕+찜질방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7세이하)	성인	청소년	어린이 (7세이하)	
사용료	4,500		3,500	7,000		4,000	

기금 관리대장(제9조 관련)

연월일	예금				인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적요	금액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지금 지출대장(제9조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제9조 관련)

[illegible]

관계법령 발췌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의 협의를(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4.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

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6.1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